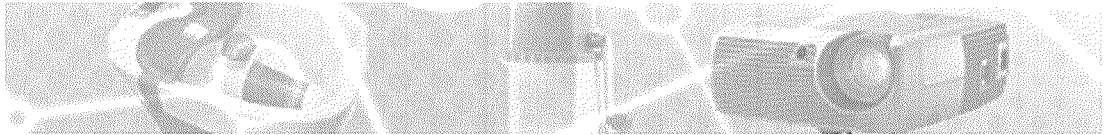


# 족욕기 · 빙수기 · 프로젝터도 안전인증 의무화

- 신기술제품 · 중고수입전기용품에 안전관리 강화 -



10월부터 중고복사기 등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2007년 3월부터 족욕기 · 빙수기 · 프로젝터 등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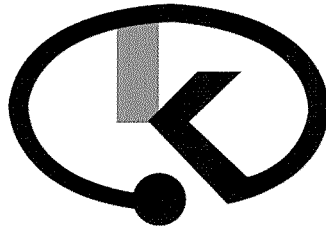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9일 불법 ·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족욕기 등 물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 안전위해성이 높은 제품과 프로젝터 · 전기훈증살충기와 같은 신기술제품 등 총16개 품목은 2007년 3월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고복사기 수입 증가에 따라, 현재 제조업자만이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법령을 개정, 중고전기용품 수입시에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불법 전기용품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전담기관으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하고,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도 연1회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

기술표준원 조기성 안전서비스표준부장은 “내년부터 불법, 불량제품의 신고 접수 및 안전위해 정보제공을 위해 경찰청 · 소비자보호원 등과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해당 업체 및 정부에 시정

또는 법적 조치를 권고하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화재 · 감전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 · 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전기용품 구입시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산업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 사무관(509-7235)